◎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0340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239호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 2023-004호

2023년도 제2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 묵인희

< 2023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

비전

"치매극복기술개발을 통한 치매 발병 5년 지연으로 연간 치매환자 증가속도 50% 감소"

추진목표

-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융복합 분석기술 R&D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예측진단기술 개발
- 국가치매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초·임상 중개연구 생태계 조성

성과목표

치매 발병 신규기전·원인규명 및 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치매 진단·치료기술 검증 및 임상연계를 위한 기술 고도화 → 치매 진단·치료기술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실용화

중점 추진분야

01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 1-1. 치매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 1-2. 치매 오믹스 분석 연구
- 1-3.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 규명
- 1-4.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02 예측 및 진단기술개발
- 2-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기술 개발
- 2-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 2-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 2-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진단기술 개발
- 2-5.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구축
- 2-6.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03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
- 3-1. 치매치료제 개발
- 3-2. 뇌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 3-3.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2023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 혁신적·창의적인 최신 연구·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치매 극복 핵심기술 개발
- 활용도 높은 치매 극복 기술 발굴 및 고도화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 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3년도 신규과제 지원내용 및 규모 >

구분	RFP명	지원규모 (1차년도)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요건	선정예정 과제 수
3.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3-1.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1상 혹은 임상2상)	1,000백만원 이내/년 (667백만원)	3년 이내 (1차년도는 8개월)	· (지원대상) 산학연병 ·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	1

Ⅱ. 신청요건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개발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및 수행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될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 (참여율) 연구자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는 사업단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선정된 연구자의 경우, 해당 과제 종료 시까지는 사업단 타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원 불가

※ 사업단 2020년도 선정과제의 경우 사업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방법

❑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 지원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과제 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전산입력사항 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 · 승인	**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자세한 내용은 ‘공고안내서’ 참고

❑ 서류제출기한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3.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	3-1.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1상 혹은 임상2상)	2023. 04. 11 14 : 00	2023. 04 11 18 : 00

※ 신청 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Ⅴ. 기 타

❑ 참여기업 부담금(연구개발과제별 산정)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필요하며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 및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기업부담금을 정부지원금과 1:1 비율로 매칭해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참여기업 부담 현금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 수행 기간 내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 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 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 시 2명 인건비 감면)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선정과제 별도 안내)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출연금의 10%

※ 자세한 내용은 ‘공고안내서’ 참고

VI. 문의처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사업단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www.kdrc.re.kr)

❍ 담당자 안내

구분	공고단위(RFP)	사업내용(RFP)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사항	
		담당자	연락처
3.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3-1.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1상 혹은 임상2상)	R&D기획평가팀 이소영	02-3668-7402 02-3668-7404